

#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학칙

## 제 1 장 총칙

**제 1 조 (목적)**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하고, 글로벌 마인드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환태평양시대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 
<개정 2009. 12. 31>

**제 2 조 (명칭)** 본교는 아시아 퍼시픽 국제 외국인학교 (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) 라 칭한다.

**제 3 조 (위치)** 본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57에 둔다. <개정 2021. 1. 15>

##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

**제 4 조 (수업연한)**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.

1. PreKindergarten (유치원준비과정) 1년
2. Kindergarten (유치원) 2년
3. 초등학교 5년
4. 중학교 3년
5. 고등학교 4년

<개정 2009. 12. 31>

**제 5 조 (입학자격)**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입학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인의 자녀 (부모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) <개정 2021. 1. 15>
2. 해외 3년 이상 장기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<개정 2009. 12. 31>
3. 귀화자의 자녀로써, 기준에 다니는 국내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이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내국인 <본조신설 2021. 1. 15>
4.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인재로 인정된 자의 자녀는 정원의 입학 허용 <본항신설 2026. 3. 11>

## 제 3 장 학년, 학기, 및 휴업

**제 6 조 (학년, 학기)**

(1) 학년은 다음과 같다.

1. PreKindergarten 1학년
2. Kindergarten 1학년, 2학년
3.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, 5학년
4. 중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
5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 <개정 2009. 12. 31>

(2) 각 학년별 학기는 4분기로 나누되 제 1분기와 제 2분기는 8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, 제 3분기와 제 4분기는 1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로 한다. 단, 매학년도 학기일은 학사일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 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30>

**제 7 조 (휴업일)**

(1) 휴업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국경일 및 공휴일
2. 명절 (설, 추석) 공휴일
3. 추수감사절 휴일
4. 부활절 휴일
5. 여름방학
6. 겨울방학
7. 개교기념일

(2) 제 1항 외에 각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 조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.

(3) 천재지변, 비상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(4)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등교 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.

**제 4 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**

**제 8 조 (학급)** 본교의 학급수는 총 32학급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**제 9 조 (학생정원)** <개정 2021. 1. 15>

(1) 학생정원은 총 800명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(2) 각 학년당 정원은 다음과 같다.

	학년	학급수	정원
PreKindergarten	1학년		10
	소계	1	10
Kindergarten	1학년		10
	2학년		20
	소계	2	30
초등학교	1학년		50
	2학년		50

	3학년		50
	4학년		50
	5학년		50
	소계	10	250
중학교	1학년		70
	2학년		70
	3학년		70
	소계	7	210
고등학교	1학년		75
	2학년		75
	3학년		75
	4학년		75
	소계	12	300
합계		32	800

## 제 5 장 교육과정, 수업일수 및 교사

제 10 조 (교육과정)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 교육부 인가 (WASC) 교육과정에 준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제 11 조 (수업일수) 연간 총 수업일수는 각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

제 12 조 (교사)

- (1) PreKindergarten 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과목교사의 책임 하에 정기 중간교사와 기말교사 외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.
- (2)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해당 담당 과목 교사의 책임 하에 정기 중간교사 및 기말교사 외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## 제 6 장 수료 및 졸업

**제 13 조 (수료, 졸업)**

- (1)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 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.
- (2)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매분기 결석 일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**제 14 조 (학위증 수여)** 학교장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.

**제 7 장 전학, 입학 및 재, 편입학**

**제 15 조 (입학 시기)**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인 8월 중순 경으로 한다.

**제 16 조 (입학 허가)** 본교의 학칙 제 5 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서류심사, 면접 및 필기시험을 거쳐 학급 배정 등을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**제 17 조 (전, 편입학)** 본교에 전,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 16 조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**제 18 조 (재입학)** 본교를 자퇴 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 19 조 (입학서류)**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- (1) 입학자격에 관한 서류
- (2) 입학원서
- (3) 예방 접종 기록부
- (4) 입학 전 취학한 학교의 성적표
- (5) 학력평가 기록부 <개정 2009. 12. 31>

**제 20 조 (전, 편입학 서류)** 본교에 전, 편입학을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2. 31>

**제 21조 (서약서)** 입학 (전, 편입학, 재입학 포함)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
**제 22 조 (보증인)**

- (1)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
- (2) 보증인은 학생과 같은 거주지 내에 생활하면서 학생의 모든 학업생활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(3) 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학교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.

**제 8 장 휴학, 퇴학 및 상벌**

**제 23 조 (휴학)**

- (1)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고 보증인이 연서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.
- (2)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교과과정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

**제 24 조 (자퇴)** 스스로 퇴학 (타교 전학을 포함)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 25 조 (표창)**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, 근면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,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

**제 26 조 (징계)**

- (1)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.
- (2)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, 근신,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.

**제 27 조 (퇴학처분)** 학교장은 학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- 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.
- 2.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.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.
- 4.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.

**제 9 장 수업료 및 입학금**

**제 28 조 (징수금)**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매학년 초마다 해당년도 학교 예산에 부합한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징수한다.

**제 29 조 (체납자 조치)** 2개월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2. 31>

**제 30 조 (장학금)** 학생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과 서류 심사를 거쳐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한다. <본조신설 2009. 12. 31>

**제 31 조 (환불)** 수업료와 버스비는 다음 일정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하다.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일시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일시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에 제한한다. 따라서, 입학원서 전형료, 입학금, 등록비, Senior Fee, 수업료 중 미화 부분, 분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분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 전쟁, 내전, 파업, 자연 재해 등 대규모의 재해가 있을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. <본조신설 2023. 8. 30><개정 2025. 03. 04>

환불 일정 (일시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일시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에만 적용. 입학원서 전형료, 입학금, 등록비, Senior Fee, 수업료 중 미화 부분, 분납으로 납부한 수업료, 분납으로 납부한 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)	
날짜	환불
매년 7월 31일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80% 일시납 버스비의 90%
제 1분기 시작 1일전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75% 일시납 버스비의 80%
제 1분기 종료 4주전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70% 일시납 버스비의 70%
제 1분기 종료일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60% 일시납 버스비의 60%
제 2분기 종료일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40% 일시납 버스비의 40%
제 3분기 종료일까지	일시납 수업료의 20% 일시납 버스비의 20%
제 4분기 시작 이후	일시납 수업료의 0% 일시납 버스비의 0%

## 제 10 장 교장,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

**제 32 조 (교장의 자격)** 교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- (1) 학사 학위 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인 자.
- (2) 미국 WASC (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) 인증 기관이 요구하는 교원자격을 충족하는 자. <본조신설 2009. 12. 31>

**제 33 조 (교원의 임용기준 및 면직)**

- (1) 교원의 임용기준은 학사 학위 이상 학력과 미국 WASC (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)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교원자격을 충족하는 자.
- (2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면직할 수 있다.
  1.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.
  2. 본교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. <본조신설 2009. 12. 31>

## 제 11 장 보칙

**제 34 조 (학칙개정)** 본교의 학칙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개정되며, 변경된 학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보고한다. <개정 2023. 8. 30>

## 부칙

**제 1 조**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
**제 2 조 (시행일)**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 3 조 (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경과 조치)**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기준은 <<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>>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 <본조신설 2009. 12. 31>

**제 4 조 (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)** <<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>>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제 5 조의 입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<본조신설 2009. 12. 31>